

‘축산환경 개선의 날’ 확대 운영 계획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'18.5월부터 매월 두 번 째 수요일에 '축산 환경 개선의 날'을 추진하고 있다. 가축질병 예방관련 소독제 살포와 악취저감 및 퇴액비 부숙관련 미생물제 사용 효과 등을 감안하여 '일제소독의 날'과 '축산환경 개선의 날', 구서구충 방제를 통합하며 '축산환경 개선의 날'을 확대 운영 할 계획을 알렸다.

1. 현황 및 문제점

- (현황) 농장 주변, 축사 내외부 청소·소독은 공통적으로 실시

- 다만, 환경·소독·구서(구충)의 날 운영 취지에 따라 중점 점검사항은 상이

구분	축산환경 개선의 날	일제 소독의 날	구서·구충의 날
운영 주기	▷ 매월 두 번째수요일(월 1회)	▷ 매주 수요일(주 1회)	▷ 매주 수요일(주 1회)
대상	▷ 축산농장, 공동자원화 시설	▷ 축산농장, 축산관계시설, 차량	▷ 양돈농장
주관 부서	▷ 축산환경자원과	▷ 구제역방역과	▷ 구제역방역과
점검 내용	▷ 축사 내외부 청소, 축사 외부 소독,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 등	▷ 축사 내·외부 청소, 생식회 도포 등 소독, 축산관계시설·차량 및 주요도로 소독 등	▷ 양돈농가의 농장 주변 청소·소독, 돈사 및 주변 구서·살충제 살포
중점 분야	▷ 미생물제제 살포	▷ 소독제 살포	▷ 구서·구충제 살포

- (문제점) 주관부서가 다르고, 운영 목적도 달라 시너지 효과 한계

- 소독제, 구서·구충제, 미생물제제 살포시 상호 간 효과* 저하 문제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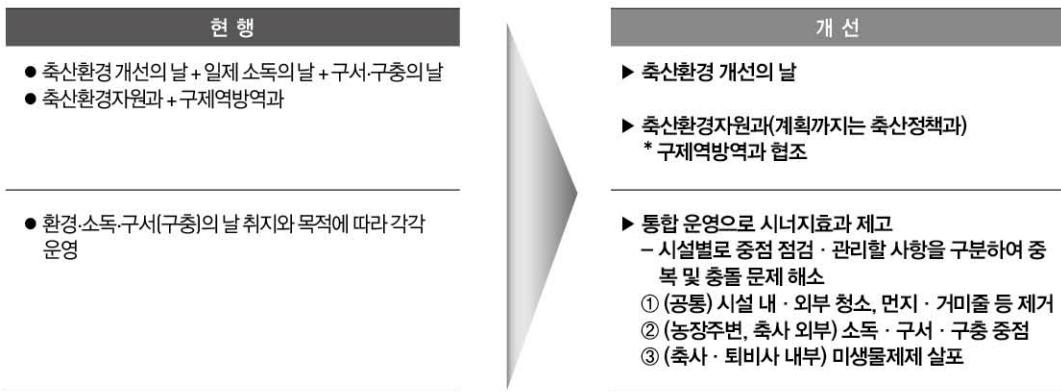
* 축사 및 퇴비사의 퇴비에 소독제 살포시 미생물 사멸 등으로 미생물제제 투입 효과 저하

- 환경·소독·구서(구충)의 날을 각각 운영함에 따라 현장에서 혼선 초래 우려

2. 통합 운영계획

- (기본방향) 환경·소독·구서(구충)의 날을 ‘축산환경 개선의 날’로 통합 운영

○ 상호간 충돌되는 부분은 보완하여 통합 운영 효과 제고



◎ (운영기간) '20.4 ~ 10월(7개월), 매주 수요일

- 농장 및 주변 청소·소독, 시설 점검·보완 등을 포함하여 종합 캠페인 전개

◎ (관리방법) 시설별로 점검·관리할 사항을 구분하여 상호 충돌되지 않도록 추진

※ 소독제, 구서·구충제 살포 시 가축사육공간 및 퇴비사 내부에는 살포를 금지하여 미생물이 사멸되지 않도록 유의

* 가축질병 발생시에는 방역긴급행동지침(sop)에 따라 조치

- (농장 주변, 축사 외부, 축사 내부 이동통로) 청소, 소독 및 구서·구충 활동에 중점

- (가축사육공간, 퇴비사 내부) 미생물제제 살포 등 퇴비 부숙관리 중점

* 축사 내·외부, 퇴비사 등 시설별 소독·방제, 환경 정비 등 요령 안내

◎ (기관별 역할) 방역대상 취약농가* 소독·방제 강화, 소독·방제·미생물제제 적극 지원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 운영

* (축산환경관리원) 깨끗한 축산농장, 광역악취개선지역, (방역본부) 소독·방역 취약농가 선정 등

- (농식품부) 축산환경자원과 총괄·운영

- (지자체, 농협) 자체 소독차량 등을 활용하여 일제 소독, 구서·구충 실시

* 지자체는 축산팀, 방역팀의 인력,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TF 구성 등 업무분장

- (소독·방제반 편성) 지자체 및 농협(방제단 540개반) 소독차량을 활용하여 방역취약대상을 구분, 소독·방제반 편성·운영

* 매주 화요일은 소독차량에 구충 방제약품(WTO 지정 U등급의 저독성약품을 권고)을 사용하여 구충 지원, 축사 환경개선의 날(매주 수)에는 소독차량에 소독약품을 사용하여 소독 지원

- (약품지원) 농가에게 구서·구충제,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제 적극 지원

- (점검·관리) 방역 취약 농가, 악취민원 다발농가 등은 집중 점검·지도

○ (검역본부) 「축산환경 개선의 날」 일제 소독 및 방역 추진실태 점검

* KAHIS 등록 농가(174천호) 대상 축산환경 개선의 날 참여 독려 문자 발송

○ (방역본부) 전화예찰 요원을 활용, 축산호나경 개선의 날 홍보 및 소독·방제 실시 독려

○ (축산단체, 농가) 농가 대상 참여 독려·홍보, 축산시설 일제 청소 소독 방제 실시

○ (축산환경관리원) 축산환경 개선의 날 추진실적 DB 관리 및 홍보물 제작·보급

붙임1

각 기관별 역할 분담

기관	주관(총괄)	협조	비고
농식품부 (검역본부)	축산환경지원과	구제역방역과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행 및 추진결과 총괄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분뇨·악취 등 환경개선 위주로 관리하되 현장점검시 소독 방역 구서구충 사항 지도 점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독방역, 구서구충 중점관리 지역·농가 지도점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소독방역, 구서구충 위주로 관리하되 현장점검시 분뇨·악취 등 환경개선 사항 지도 점검 * 가진법 위반 시 행정처분 등 	
시도	축산과	방역과	축산환경 개선의 날 농가자기점검표를 활용 농가 점검 * 점검표 외 가진법 준수사항은 소독의 날 자료 활용 (확인서 등)
시군	축산팀	방역팀	
관련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합원, 회원농가 대상 문자발송, 밴드, 카톡 등 홍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자체 주관 지도점검반 구성사참여 등 지원 		

불임2 점검요령 및 농가 자가진단서

“내농장 내가 지킨다” 농장 소독·방영·악취 점검요령

구분	축사 외부	축사 내부	가축분뇨처리시설
	<p>◎ [외부 차단] 축사 경계선(외부)에 울타리 설치 및 쓰레기더미, 수풀 등 제거 * (데자) 높이 1.5m 이상, 윗부분에 뾰족한 철조망 설치(20cm x 20cm 구멍의 철망을 1m 간격으로 이중망 설치 권장)</p>		
	<p>◎ [조류 등 야생동물 차단]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, 허수아비 및 반사판 설치, 벽면 조밀망 설치, 건물 입구에 방충망 등 설치(환풍기, 창문 등에 방충망 설치), 조류 기피제 등 살포</p>		
	<p>◎ [설치류 등 구서]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, 농장 내부 배수로, 축사 및 사료 보관창고, 깔짚 보관창고, 퇴비사 등 틈새 메우기, 미끼통 및 취몇 설치, 건물 입구에 망충망 등 설치(환풍기, 창문 등에 방충망 설치) - 축사 울타리에 생식회(폭 50cm 이상) 등 야생동물 기피제 살포, 축사 내부 및 퇴비사 외부에 만성설서제 살포 * 만성설서제 살포시 가축의 허가 달지 않고 바람에 날려 가축이 먹지 못하도록 주의</p>		
방역	<p>◎ [파리·모기 구충] 축사 내외부, 처리시설에 끈끈이 트랩[trap], 성충유인 트랩(흑설탕+효모+살충제 0.3~1.0%), 해충램프 설치, 웅덩이 제거 - 유충 발생시 톱밥, 왕겨 등으로 덮기(약 10~20cm) 또는 석회석 살포(6kg/m²) * 살충제는 가축의 허가 달지 않는 통로 및 벽면 등에 살포하고 퇴비더미에 살유충제 살포시 친환경농자재만 사용</p>		
	<p>◎ [생식회] 축사 진입로 약 2평* 면적에 생식회를 평당 2kg 살포(평당 1kg) * 5톤 차량의 폭 및 바퀴 1회전 감안 하여 폭 2.5m, 길이 2.5m 권장 - 3일마다 평당 100g 이상 추가 살포(차량 운행정도, 오염상태 감안 결정)</p>		<p>◎ 퇴비더미에 생식회 활용 방법 ① 1m²당 가축분뇨 15cm 적재시마다 생식회 등 0.6cm(6kg) 내외 살포(7.5kg 이내) ② 생식회 살포하고 1~7일 후 미생물 제제를 살포하고 교반 작업 * 발열 및 일킬리 성분으로 바이러스 등 사멸, 구충, 부숙 죽진 및 비료 효과증진</p>
	<p>◎ [전실-가금] 축사 입구 전실 설치, 축사 동별 및 퇴비사 이동시 전용의복과 장화를 갈아신고 손씻기 등을 철저</p>		
	<p>◎ [사체] 폐사체·유산축·태반 등은 격리시설에 보관(냉장보관 또는 소독제, 생식회 등 도포) 또는 신속 위탁처리 * 퇴비사에 투입금지</p>		
	<p>◎ [개, 고양이 등] 지정된 장소에 가두어 시육하거나, 둑어서 사육(농장내 돌아다니지 않도록 관리)</p>		
	<p>◎ [소독제] 축사 외부, 사료보관 창고 내외부, 출하대, 축사 내부의 이동통로, 착유실 등 소독(주 1회 이상) 및 기록 * 가축 사육공간, 퇴비사 퇴비더미에 소독제 살포 금지</p>		
소독	<p>◎ [소독조] 축사 입구의 발판소독조 세척 후 소독약 교환·보증 * 발판소독조 옆에 세척소독조를 두어 장화 등을 먼저 세척후 소독조에 서 소독 * 차량소독조는 차 바퀴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하고 주 2~3회 소독약 교환</p>	<p>◎ [자재] 사료급이조 및 급이라인, 급수조 및 급수니플 등 청소 및 소독(수시)</p>	



구분	축사 외부	축사 내부	가축분뇨처리시설
<p>◎ [장비] 사용하는 장비는 매일 세척·소독한 후 농장내 물품보관시설에서 보관</p>			
소독	<p>◎ [작업복] 청소시 착용했던 작업복, 모자, 신발 등을 매일 소독하고 2~3일 간격으로 세탁</p> <p>◎ [자재] 주사기, 인공수정기, 노즐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은 주기적(주 2~3회)으로 세척·소독하고 내부 물품보관함에 보관</p>		
	<p>◎ (청소) 분뇨처리시설 외부 잡초 제거 및 쓰레기더미, 수풀 제거, 폐 사료포대 및 폐 기자재 정리 등</p>	<p>◎ (청소) 벽면·지붕의 거미줄, 이동통로 및 케이지[스틀]의 똥딱지, 사료 찌꺼기 등을 청소(주 1회 이상) * 컨베이어벨트에 붙은 똥딱지 제거</p>	<p>◎ (시설점검) 퇴비, 액비, 정화, 악취저감시설의 외벽의 균열, 고액분리실(양돈, 젖소) 및 컨베이어벨트(가금) 밀폐화 및 악취 누출 점검·보수, 정상 작동(24시간) 등 점검 및 보수</p>
<p>◎ (분뇨 관리) 축사 외부 및 처리시설 외부에 유출된 분뇨(방치 축분) 제거 및 유출방지턱 설치(축사 바닥 50cm 이내, 퇴비사 2m 이내)</p> <p>- 분뇨가 한우 젖소 등은 유출 방지턱, 돈사 피트(pit) 등 높이의 2/3를 넘지 않도록 관리</p>			
환경 · 악취		<p>◎ (깔짚 및 퇴비더미 관리) 수분정도 60% 내외 유지, 깔짚이 가축의 몸에 묻거나, 발굽 이상 빠지면(수분정도 70% 이상일 경우) 텁밥 등 추가 살포</p> <p>* 축사 바닥에 텁밥 5cm 살포시 38일, 15cm 80일 이용 가능</p> <p>* 깔짚을 손으로 쥐었을 때 물기 및 분뇨가 손가락 사이로 묻어 나오면 수분 70% 이상으로 판단</p>	
	<p>◎ [미생물제제] 축사 바닥 깔짚, 돈사 바닥(슬러리피트) 등 가축사육 공간과 퇴비더미에 미생물제제 살포(주 1회 이상 권장)</p> <p>* 물 1톤에 미생물 2~5 ℥를 혼합 후 축사 및 퇴비사 3.3m³(1평) 당 1ℓ 살포, 액비시설에 톤당 0.2~0.5 ℥ 이상 투입</p>		
	<p>◎ [교반관리] 축사바닥 깔짚 및 퇴비사 퇴비더미를 관리기·트랙터 등으로 교반관리(주 1회 이상)</p>		
			<p>◎ [액비관리] 액비 생산과 저장시설로 구분 관리하고 고액분리된 액상을 만 생산시설에서 발효(증숙)하여 저장 시설(부숙)로 이송</p> <p>* 생산시설은 공기를 30 ℥ /분/m³, 24 시간 공급(단, 과록기 등의 경우 간헐적 공급 가능)</p>
기록 의무	<p>▷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및 출입기록부 작성 비치, 1년간 보관[가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[별지 제6호 서식]]</p> <p>▷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한 자는 입식·출하 기록부 기록·비치, 1년간 보관[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 [별지 제52호 서식]]</p> <p>▷ 가축분뇨 및 퇴비·액비 관리대장 기록 비치, 3년간 보관[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46조 [별지 제22호 서식]]</p> <p>- (퇴액비 살포) 부숙도 검사후 기준 적합 퇴액비만 농경지 등에 살포</p> <p>* (퇴비) 배출시설 1,500m³미만은 부숙 중기, 1,500m³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원료, (액비) 부숙</p>		

▶ ‘축산환경 개선의 날’ 농가자가 점검표(매주 수요일) ▶

○ 농장명 :

○ 축종 및 사육규모 : , 두

○ 주 소 :

○ 관리일 : 년 월 일

구분	점검 내용	관리상태	
		○	×
축사 외부	◎ [외부 차단] 축사 경계선(외부)에 울타리 설치, 축사외부 및 처리시설 주변 잡초 제거 및 쓰레기더미, 수풀 제거, 폐 사료포대 및 폐 기자재 정리 등 * (돼지) 높이 1.5m 이상, 윗부분에 뾰족한 철조망 설치(20cm x 20cm 구멍의 철망을 1m 간격으로 이중망 설치 권장)		
	◎ [조류 등 야생동물 차단]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, 허수아비 및 반사판 설치, 벽면 조밀망 설치, 건물 입구에 방충망 등 설치(환풍기, 창문 등에 방충망 설치), 조류 기피제 등 살포		
	◎ [설치류 등 구서]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, 농장 내부 배수로, 축사 및 사료 보관창고, 깔짚 보관창고등 틈새 메우기, 미끼통 및 쥐덫 설치, 건물 입구에 망충망 등 설치 - 축사울타리에 생식회(폭 50cm 이상) 등 야생동물 기피제 살포, 축사 내부 및 퇴비사 외부에 만성설서제 살포 * 만성설서제 살포시 가축의 혀가 달지 않고 바람에 날려 가축이 먹지 못하도록 주의		
	◎ [파리·모기 구충] 축사 내외부, 처리시설에 끈끈이 트랩(trap), 성충유인 트랩(혹설탕+효모+살충제 0.3~1.0%), 해충램프 설치, 웅덩이 제거 - 유충 발생시 톱밥, 왕겨 등으로 덮기(약 10~20cm) 또는 석회석 살포(6kg/m ²) * 살충제는 가축의 혀가 달지 않는 통로 및 벽면 등에 살포하고 퇴비더미에 살유충제 살포시 친환경농자재만 사용		
	◎ [생식회] 축사 진입로 약 2평* 면적에 생식회를 평당 2kg 살포(평당 1kg) * 5톤 치량의 폭 및 바퀴 1회전 감안하여 폭 25m, 길이 25m 권장 - 3일마다 평당 100g 이상 추가 살포(치량 운행정도, 오염상태 감안 결정)		
	◎ [전실-가금] 축사 입구 전실 설치, 축사동별 및 퇴비사 이동시 전용의복과 장화를 갈아신고 손씻기 등을 철저		
	◎ [소독조] 축사 입구의 밸판소독조 세척 후 소독약 교환·보충 * 밸판소독조 옆에 세척소독조를 두어 장화 등을 먼저 세척후 소독조에서 소독 * 치량소독조는 차 바퀴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하고 주 2~3회 소독약 교환		
	◎ [사체] 폐사체·유산축·태반 등은 격리시설에 보관(냉장보관 또는 소독제, 생식회 등 도포) 또는 신속 위탁처리 * 퇴비사에 투입금지		
	◎ [개, 고양이 등] 지정된 장소에 가두어 시육하거나, 둑어서 사육(농장내 돌아다니지 않도록 관리)		
	◎ [소독] 축사 외부, 사료보관 창고 내외부, 출하대, 축사내부의 이동통로, 침유실 등 소독(주 1회 이상) 및 기록 * 가축 사육공간, 퇴비사 퇴비더미에 소독제 살포 금지		
축사 내부	◎ [분뇨 관리] 축사 외부 및 처리시설 외부에 유출된 분뇨(방치·축분) 제거		
	◎ [장비] 사용하는 장비는 매일 세척·소독한 후 농장내 물품보관시설에서 보관		
	◎ [작업복] 청소시 착용했던 작업복, 모자, 신발 등은 매일 소독하고 2~3일 간격으로 세탁		
	◎ [소독] 사료 급이조 및 급이라인, 급수조 및 급수 니플 등 청소 및 소독(수시)		
	◎ [자재] 주사기, 인공수정기, 노출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은 주기적(주 2~3회)으로 세척·소독하고 내부 물품보관함에 보관		



구분	점검 내용	관리상태	
		<input type="radio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(청소) 벽면·지붕의 거미줄, 이동통로 및 케이지(스톨)의 뚱딱지, 사료 찌꺼기 등을 청소(주 1회 이상) * 컨베이어벨트에 붙은 뚱딱지 제거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(분뇨 관리) 축사 바닥의 유출방지턱 설치(축사 바닥 50cm 이내), - 분뇨가 한우 젖소 등은 유출 방지턱, 돈사 피트(pit) 등 높이의 2/3를 넘지 않도록 관리 		
축사 내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[깔짚 관리] 수분정도 60% 내외 유지, 깔짚이 가축의 몸에 묻거나, 발굽 이상 빠지면(수분정도 70% 이상일 경우) 톱밥 등 추가 살포(축사 바닥에 톱밥 5cm 살포시 38일, 15cm 80일 이용 가능) * 깔짚을 손으로 쥐었을 때 물기 및 분뇨가 손가락 사이로 묻어 나오면 수분 70% 이상으로 판단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(미생물제제) 축사 바닥 깔짚, 돈사 바닥(슬러리피트) 등 가축사육 공간에 미생물제제 살포(주 1회 이상 권장) * 물 1톤에 미생물 2~5ℓ 를 혼합 후 축사 및 토비사 3.3m²(1평) 당 1ℓ 살포, 액비시설에 톤당 0.2~0.5ℓ 이상 투입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(교반관리) 축사 바닥 깔짚을 관리기기 트랙터 등으로 교반관리(주 1회 이상)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[설치류, 조류 유입방지] 퇴비사 등 틈새 메우기, 미끼통 및 쥐덫 설치, 허수아비 및 반사판 설치, 벽면 조밀망 설치, 건물 입구에 망충망 등 설치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(시설점검) 퇴비, 액비, 정화, 악취저감시설의 외벽의 균열, 고액분리실(양돈, 젖소) 및 컨베이어벨트(가금) 밀폐화 및 악취 누출 점검·보수, 정상작동(24시간) 등 점검 및 보수 		
기축 분뇨 처리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(퇴비사 등) 유출방지턱 설치(퇴비사 2m 이내)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[퇴비더미 관리] 수분정도 60% 내외 유지, 수분정도 70% 이상일 경우 톱밥 등 추가 살포 * 축사 바닥에 톱밥 5cm 살포시 38일, 15cm 80일 이용 가능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(미생물제제) 퇴비더미에 미생물제제 살포(주 1회 이상 권장)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(교반관리) 퇴비더미를 트랙터, 스키드로더 등으로 교반관리(주 1회 이상)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(액비관리) 액비 생산과 저장시설로 구분 관리하고 고액분리된 액상물만 생산시설에서 발효(증숙)하여 저장 시설(부숙)로 이송(생산시설은 공기를 30 ℓ /분/m³, 24시간 공급, 단, 과폭기등의 경우 간헐적 공급 가능) 		
기록 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및 출입기록부 작성 비치, 1년간 보관{가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[별지 제6호서식]}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한 자는 입식·출하 기록부 기록·비치, 1년간 보관{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 [별지 제52호 서식]}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가축분뇨 및 퇴비·액비 권리대장 기록 비치, 3년간 보관{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46조 [별지 제22호 서식]} - (퇴)액비 살포) 부속도 검사 후 기준 적합 퇴액비만 농경지 등에 살포 * (퇴비) 배출시설 1,500m² 미만은 부속 증기, 1,500m² 이상은 부속 후기 또는 원료, (액비) 부속 		